

1950년대 대중잡지 『아리랑』의 법담론 구성과 매체전략

홍순애*

1. 서론
2. 법률상답을 통한 '법주체' 탄생과 법의 상식화
3. 범죄 실화를 통한 법담론의 공유와 법의 대중화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50년대 대표적인 대중오락지인 『아리랑』을 중심으로 법담론의 대중화 과정과 매체전략을 논의했다.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의 집합체이며, 국가 건설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1950년대 전후 사회적 혼란과 빈곤, 카오스의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 제정과 시행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였고, 도덕과 윤리의 해체, 사회적 모순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의 필요성은 가속화 되었다. 1950년대는 전후 국가 재건을 위한 법 제정과 공포의 시대였다.

1950년대 대중지의 호황 속에서 잡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담론을 구성하고 있는데, 흥미본위의 대중오락잡지인 『아리랑』은 '이야기 중심적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편집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법률상담' 코너를 통해 독자의 사연을 전달하고 법적인 해결방식들을 공유하면서 독자의 참여를 유도, 법의 상식화를 시도했다. 또한 오락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재미, 추리의 독서물로써 '범죄 실화'를 연재하면서 현실의 법 적용의 문제를 일상적 차원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코너의 연재는 가족법 층위의 혼인, 이혼의 법 적용의 난점과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의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부계 중심적 법의 모순을 논의함으로써 가족을 법적으로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 대중지의 법담론은 법치주의의 민주정치에 의한 국가상을 구상하며 국민화 담론의 일부로서 논의되었고, 국가의 실체로서의 법의 개념을 정초하며 법적 주체로서의 국민의 탄생을 견인했다. 법에 대한 대중화와 법 주체의 탄생은 정치적 권력의 저항동기를 추동함으로써 4.19를 예비하고 있었고, 혁명의 주체를 구성하는 실천적 담론의 역할을 수행했다. 법치주의 개념과 개인의 법의식 형성은 대중지의 법담론을 통해 가능했고, 이것은 4.19와 1960년대 시민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필연적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1950년대, 법, 『아리랑』, 헌법, 국가보안법, 가족법, 신민법, 법의식, 법감정)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발간된 대중잡지의 법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전후 국가 재건기 법에 대한 인식과 대중의 법감정의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잡지의 성격에 따라 법담론이 매체의 전략에 의해 차별적으로 전유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것이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공동체의 분쟁을 조율하는 규범의 집합체이기에 국가 형성의 필수불가결한 제도다. 해방 후 미군정과 제1공화국 초기는 새로운 국가 건립을 위한 법제가 창설되는 시기로 헌법을 필두로 형법, 민법 등의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미군정은 1946년 2월 ‘입법의원’을 발표, 1947년 6월에는 남조선과도 행정명령 제3호를 공포하여 법전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다.¹⁾ 정부수립 직후 1948년에는 법전편찬위원회 직제가 공포되어 사법 법규의 자료들을 수집, 기초법전 초안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한민국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에 이어서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징발법, 행정대집행법 등 법치주의 구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법률들이 한국전쟁 와중에도 제정되었고, 휴전협정 이후 1953년 10월 신형법이 공포되었다. 1950년대 전후 사회적 혼란과 빈곤, 카오스의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 제정과 시행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였고, 도덕과 윤리의 해체, 사회적 모순이 분출되는 가운데 가치체계의 전환은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가속화 했다. 전후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법의식과 법감정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당대의 담론을 주도했던 대중잡지들은 이러한 법을 어떻게 담론화하고 의미화 했는가.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아리랑』의 법담론 구성과정과 대중들의 법감정의 의미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잡지의 매체전략과 연결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람페에 따르면 “법의식이란 인간이 개인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회 전체에는 법체계로서 사회적 행위에 최고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 속에서 연대의 한 부분을 형성해 있는 상태”²⁾라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 법의

1) 마정윤,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제8권 3집,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161쪽.

식은 법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규율의식으로 사회 공동체 일원이 법을 인식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사회적 구성물로서 법의식은 법에 대한 개인의 가치판단과 관계되며 규범, 질서, 도덕, 정의, 권리, 자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공동체의 전반적인 양상을 거시적으로 보는 법문화라는 개념과 달리 법의식은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 양상이나 가치관에 보다 관심을 두는 입장이다. 법의식이 인식에 강조점을 둔다면, 법감정은 감성이나 정서에 강조점을 둔 것이라 구분할 수 있다.³⁾ 해방 전 식민지법의 강력한 통치를 받아온 상황에서 법은 착취와 지배의 수단이었고, 식민지 법에의 저항은 당위적 사실로 인지되었기에 법의식은 부정적이었다. 법의 징벌적, 통제적 기능에 익숙해져 있던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제1공화국의 법치주의를 표명한 법의 제정과 시행은 낯선 것이었으며, 권리에 대한 인식 또한 새로운 것이었다.

1950년대는 신생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과 공포, 시행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란 단순히 법률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타율적인 규율을 위한 규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역사와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발전되어온 사회적 제도이다. 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제도이면서 공동체의 인식과 관습, 생활 전반을 반영하는 총체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형법과 민법의 경우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생활에 관련한 법이기에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1953년 제정된 신형법에는 축첩을 간통으로 규정하여 ‘간통쌍벌주의’ 조항을 삽입, 여성에게만 적용하던 간통죄를 쌍벌죄

2) 변학수, 조흥석, 「법의식, 법감정 그리고 법제도-독일과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내재된 법의식의 문화학적 고찰」, 『독어독문학』 제103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7, 173쪽.

3) 김경민,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주거권을 주제로 한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8집, 우리말글학회, 2016, 240쪽.

로 규정하였고, 이에 신형법은 여성에 대한 권리가 진전된 법으로 강조되었다. 이어 1957년 신민법을 제정, 1958년 2월 2일 법률 제471호로 공포하였고, 신민법은 법률적 행위 능력권, 호주상속권, 재산상속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형식적 평등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⁴⁾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1959년 1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 언론 탄압과 국내외의 결사 및 단체 행동을 규제하고자 했다. 언론 통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여 이승만의 대통령직 연임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신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 평가되어 법학자들, 정치인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 제정을 둘러싼 상황들은 당시 출판시장의 호황으로 자본을 형성해 가던 잡지사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었고, 잡지는 교양과 상식, 지식의 차원으로 법담론을 구성, 전파했다.

1950년대는 대중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잡지의 봄을 이루었다. 그리고 1950년대는 잡지저널리즘이 신문저널리즘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을 발휘한 시대였다.⁵⁾ 해방 후 『백민』(1945.12), 『민성』(1945.12), 『신천지』(1946.1), 『문예』(1948.8) 등이 간행되고, 1951년 5월 전쟁 중 부산에서 간행된 대중지 『희망』을 선두로 『신태양』(1952.8), 『사상계』(1953.4), 『아리랑』(1955.3), 『여원』(1955.10), 『명랑』(1956.1), 『야담』(1955.7), 『야담과 실화』(1957.1) 등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대중교양지와 오락지가 출판시장을 장악했다. 당시

4) 이태영, 「이혼의 두 가지 길」, 『여원』, 1960.1, 181쪽

5)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집, 상허학회, 2010, 397쪽.

잡지는 반공의 이념을 전달, 국가재건과 전후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한편 아프레의 분위기 속에서 오락과 흥미, 명랑을 주조로 하는 대표적인 매체였다. 당시 정론지였던 『사상계』 2만부, 여성교양지였던 『여원』은 2만부, 대중오락지를 표명한 『아리랑』과 『명랑』은 각각 9만부와 2만부의 판매부수를 기록하며 사회, 문화담론을 선도하고 유포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대중지들은 잡지의 성격과 편집체제, 독자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방식으로 법담론을 구성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정론지, 교양지, 오락지 할 것 없이 모두 법을 정론의 형태든지, 교양의 방식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아카데미한 정론지의 성격이 짙은 『사상계』⁶⁾의 경우는 창간 초기부터 신상초, 황산덕, 장경학 등의 법학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석하면서 헌법과 민법, 형법에 대한 법리학적 차원과 법철학, 서양의 법제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력했고, 1958년 신국가보안법⁷⁾ 파동에 비판적 태도를 표명하며, 외신들이 바라보는 2.4

6) 『사상계』는 학문과 지식의 차원, 정론의 형태로 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했는데 특히 헌법에 대한 기사들을 다수 게재했다. 1958년 7월호를 제헌절기념 특집으로 구성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논의한다. 〈헌법제정의 유래〉(유진오), 〈근대헌법의 중심문제-헌법에 있어서의 존재와 가치〉(한태연), 〈기본인권개념의 생성과 발전〉(박일경),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권력의 구조〉(이정호), 〈헌정 10년의 위헌사〉(이종국)의 글을 실고 있다.

7)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던 좌익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1948년 9월 20일 김인식 의원 외 33인에 의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 기초의 건'이라는 명칭으로 국회에 제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의하던 중 1948년 10월 20일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급하게 후속입법처리를 하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어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하는 등 10개조로 구성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었고, 해방 후에는 반공을 국시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의 척결을 위해 제정되었다. 법 제정 당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반대했고, 이에 앞장섰던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는 '국회프락치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 제정 이후 1949년 한 해에만 11만 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국가보안법이 1953년 형법이 제정 이전

파동의 위험성을 전달했다. 대표적 여성지였던 『여원』은 여성법률상담소 이태영을 중심으로 민법전 제정과 여성의 법적 소외, 차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종합교양지 『신태양』의 경우는 판사, 검사 등의 전문 법률가 필진들 중심으로 법 제정의 문제와 법률조항의 현실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대중오락지인 『아리랑』, 『명랑』 또한 <법률상담소>, <법률> 등의 코너를 통해 혼인, 이혼 등의 가족법에 관련한 분쟁을 상담하는 등 개인적 차원의 법적문제에 집중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대변되는 법의 제정의 문제는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바, 1950년대 대중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인식하고 전유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50년대 대표적인 대중오락지인 『아리랑』⁸⁾을 중심으로 법담론 구성과정과 법의 대중화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잡지의 성격과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서술전략과 매체전략도 논의하고자 한다. 『아리랑』은 1950년대 대표적인 대중오락지이면서 법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하고 있어 이 시기 법의 대중화와 법인식의 양상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다.⁹⁾ 이러한 논의들은 1950년대 사회문

에 입법화된 것은 정부수립 이후 모든 것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의 기틀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장애세력인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척결이 최우선 과제였음을 보여준다.

문재태,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에 관한 검토 : 국가보안법 제7조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제13권 4호, 한국테러학회, 2020, 7-8쪽.

- 8) 『아리랑』은 1955년 3월 삼중당 서재수를 발행인으로 창간되었다. 잡지는 역사소설, 야담, 명랑소설, 실화소설, 탐정소설, 추리소설 등을 중심으로 대중오락잡지의 문화적 지향을 형성했다. '소설과 실화의 아리랑'(1955.5), 30면 증설하여 국내의 실화선 기획(1957.2), 창간 2주년 특대호와 인기스타 브로마이드 3매 증정(1957.3), '독자 대현상 모집'(1957.11), '추천모집공고'(1958.2), '발행 3일 만에 매진되는 완독 오락잡지'(1958.6), '완판잡지'(1958.9), 판형변경과 화보 대폭증가 '완독잡지'(1958.10), '완판잡지에서 소설과 화보잡지로'(1959.1), '대중오락지'(1959.4), '소설과 화보의 오락지'(1959.7), 창간 6주년 기념 '꿈과 낭만의 호화판'(1961.3), '혁신호'(1961.6), '혁명 백일맞이, 광복 16주년 기념호'(1961.10) 등 대중오락화보잡지를 표방하며 발행되었다.

화적 자장과 법문화의 양상을 대중매체를 통해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전후 법감정의 수준과 법의식의 형성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시민사회 형성을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법률상담을 통한 ‘법주체’ 탄생과 법의 상식화

1950년대 대표적 오락잡지인 『아리랑』은 삼중당의 서재수를 발행인으로 창간되었고, “선풍적인 인기리에 발간 3일 만에 완전매진”(1955.4)되어, 2호(3만부), 3호(5만부), 4호(8만부)의 놀랄만한 판매실적을 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55년 8월호는 임시증간호를 발매할 정도였고, “호화로운 사진과 웃음과 눈물이 한데 얹히는 완독소설”로 “WW사의 제공 사진을 만재하여 화보를 30페이지나 늘려서”(1958.8) 보는 잡지로 혁신, 완판잡지의 위상을 이어갔다. 『아리랑』은 연재만화, 북한실화, 북한정계야

9) 『아리랑』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최애순, 「50년대 『아리랑』잡지의 ‘명랑’과 ‘탐정’코드」, 『현대소설연구』 4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51-390쪽.

김현주, 「1950년대 잡지 『아리랑』과 명랑소설의 ‘명랑성’: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173-206쪽

위수지, 「『아리랑』지 게재 소설연구: 195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공임순, 「삼중당의 ‘대중문고’, 『아리랑』, 역사물의 연쇄와 순환」, 『춘원연구학보』 26집, 춘원연구학회, 2023, 227-259쪽.

홍순애, 「국제적 냉전체제 하 반공주의의 연성화와 ‘스파이’담론의 대중화 전략- 1950년대 『아리랑』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6집, 국제어문학회, 2023, 347-374쪽.

김연숙, 「‘욕망의 민주주의’와 젠더의 재구성 - 전후 대중잡지 『아리랑』에 나타난 직업 여성 기획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9(1), 대중서사학회, 2013, 109-140쪽.

화, 실화스토리, 영화스토리 등의 기사류와 세계명작, 순정소설, 농촌소설, 명랑소설, 탐정소설의 문학류 등 대중 독서 취향에 맞춘 이야기 중심적 기술방식을 선택하여 오락성, 교양성을 갖춘 잡지를 지향하며 1950년대 대중지의 지평을 확장했다.¹⁰⁾ 이에 법담론에 대한 내용들도 논설이나 기사의 형태가 아니라 실화와 소설의 이야기 중심적 서술형식을 보여준다.

사실 잡지의 법담론은 『아리랑』에서만 논의되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 잡지는 독자의 수준과 잡지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에 법 관련 기사와 법담론의 구성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상계』, 『신태양』이 정론의 형태로 정치적 측면과 민주주의 국가체제와 관련하여 법담론을 형성했다면, 『희망』, 『명랑』, 『아리랑』의 오락 잡지는 대중의 일상적 차원에서 법담론을 형성한다. 당시 『희망』은 〈법창야화-내락에서 외치는 호곡, 윤락녀와의 문답〉(1955.6)¹¹⁾, 〈사회루포-법창을 통해 본 여성범죄실태〉(1955.8)¹²⁾, 〈법창루포-미결인생활사, 서대위 살해〉(1955.8), 〈박인수 혼인빙자간음 피의사건 지상공판〉(1955.9)¹³⁾, 〈새 민법은 과연 여권을 침해 했는가-법률은 만인 앞에 평등하

10) 홍순애, 위의 논문, 349쪽.

11) 〈법창야화 - 내락에서 외치는 호곡, 윤락녀와의 문답〉은 19세 양공주를 인터뷰하고 있는 글로서 19세의 여성이 가난으로 윤락녀 생활을 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월수입의 일부는 집의 생활비로 보내고 포주의 소개비와 화장비, 간식대, 치료비를 제하면 빚만 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다. 기사는 전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춘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운명과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서술한다. 여기에서 법적인 내용을 서술되지 않는다.

12) 〈사회루포-법창을 통해본 여성범죄 실태〉는 일반 여성들이 양공주와 매춘녀가 되는 문제에 대해 서술한다. 지식인 여성이 전쟁 중에 양공주로 전락하는 상황, 간통쌍벌죄로 고소당하는 대부분 여성이 지식인 여성이라는 것을 밝힌다. 지식의 여부에 따라 여성의 타락하는 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식이 없는 여성이 부도의 참다움을 지켜나가는 일이 많다고 서술한다. 전후 여성의 성적타락을 지식인 여성의 개인적 취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13) 당시 대중들에게 법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각인시킨 사건 중의 하나가 박인수 혼인빙

다>(1958.3)를 게재하며 여성 매춘과 범죄, 박인수 사건을 흥미차원으로 소개하고 있고, 새 민법 제정에 대한 여성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명랑』의 경우는 <이색탐방-「여성법률상담소의 하루 - 눈물에 젖어 비운에 우는 군상들, 크리스마스 프리젠트」>(1956.12)에서 여성법률상담소의 개소에 관심을 표명하는데, 기사는 이 잡지의 유일한 법에 대한 기사였다. 『아리랑』의 경우는 <애독자상담실>을 창간 초기부터 기획하여 혼인, 이혼, 상속 등에 관련된 가족법 차원의 법률상담 코너를 운영했고, 변호사를 필자로 한 범죄 실화 형식의 <법창소설>(1960.1~1961.12)을 연재했다. '이야기 중심의 편집체계'를 내세웠던 『아리랑』은 이와 걸맞게 대중들의 법 관련 사건들을 범죄 실화를 통해 법률이야기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보다 쉽게 법률용어와 재판의 과정을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아리랑』의 <아리랑상담실>(1956.11-1961.11)은 독자들과 소통하는 코너로 기획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법률상담과 생활상담, 의학상담을 병행했다. 법률상담의 부분은 주로 변호사와 검사가 답변을 담당했다. 한 호에 4-5개의 상담건수를 게재했다면 법률상담은 한 건 내지 많게는 세 건으로 20%~60%를 차지했다. 그리고 법에 대한 문의는 신민법이 제정되는 1960년을 전후로 많이 게재되었고, 답변은 신민법의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담 코너는 당시 대중지에서 유행했는데 『희망』, 『명랑』, 『여원』에서도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희망』은 <지상법률상담실>¹⁴⁾의 코너를 검사인 김

자 재판이었는데, '법은 정숙한 여성의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많은 화제를 낳았다. 박인수는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되었고, 검찰의 항고로 2심에서는 유죄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 『희망』은 <지상법률상담실>(1955.4), <법률문답실>(1955.5, 1955.6), <법률상담실>(1955.7), <지상법률강좌>(1955.8)를 운용했는데, 법률상담에 대한 연재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너의 이름도 자주 변경되었고 잡지 초기에만 법률상담을 연재했다.

영수가 전담하여 진행했으나 간헐적으로 연재되었고 1955년 이후에는 연재되지 않았다. 『명랑』의 경우는 <법률문제>(1958.3)¹⁵⁾라는 상담코너를 통해 농지개혁, 동성동본, 적산가옥의 소유, 개명신청, 이중혼인의 문제 등에 대해 상담했다. 답변은 변호사 차영조가 담당했고 문의의 대부분은 혼인과 이혼문제였다. 여성교양지를 대표하던 『여원』¹⁶⁾에서도 <법률상의>를 신설하여 창간 2년 후인 1957년 4월부터 여성법률상담소장 이태영 변호사가 전담하여 여성독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대중오락잡지들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상담코너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했고,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독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당시 대중오락지에서 법률상담 코너가 유행했던 것은 새로운 법 제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들을 촉구하는 한편, 대중들과 현실적 고민을 공유하고자 했던 잡지의 상업적 전략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리랑』의 법률상담은 <인생문답>(1956.11)으로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는 1개의 질문만 받아 반 페이지 분량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법률상담 코너가 진행된 것은 1959년 <아리랑상담실>, <애독자

15) 『명랑』은 1958년 처음 법률상담을 연재했으나 연속성을 보이지 않는다. <법률문제>(1958.3), <법률>(1958.5, 1958.6, 1958.7, 1958.8), <법률상담>(1960.8~1961.11) 등으로 진행되었다.

16) 『여원』(1955.10 창간)은 1950년대 대표적 여성교양종합지로 창간 초기부터 여성의 법적 권리와 법적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남녀평등의 법제정에 관심을 표명한다. 특히 신민법의 제정에 관련한 여성의 축첩, 이혼, 상속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며 당대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논의들을 주도했다. 대표적으로는 <그들은 어찌하여 사슬의 몸이 되었나-여자 형무소를 찾아서>(1955.11), <민법전 제정과 여성의 지위>(이태준 민의원법사위 전문위원, 1956.11~1956.1)를 3회에 걸쳐 연재했고, <첩에 관한 신판례 비판>(1957.9, 좌담회), <여성의 죄와 벌>(이경호, 1957.12), <범죄사건의 주인공과 여성>(1959.2), <오영재씨의 고소사건과 나의 생각-내외싸움은 개도 안 먹는다>(이은우 이대교수, 1959.9), <오영재씨의 고소사건과 나의 생각-이브는 통곡한다>(박화성, 1959.9), <간통, 축첩, 이혼>(이태영, 1959.12), <새 민법과 여성의 권리>(1960.1) 등을 게재했다.

상담실)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잡지의 성격을 반영,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 질문의 수효가 4~5개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답변도 2-3 페이지 분량을 할애했을 만큼 주요한 코너로 자리 잡게 된다. 구독자들의 질문은 사건에 관련된 간단한 사항, 개인의 신상정보 위주로 서술하기도 하지만, 법률적 사항에 관계없는 노골화된 감정과 에로틱한 장면들을 서술하기도 했다. “당년 二十二세의 미혼 남성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S라는 소녀는 참 예뻐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우연한 기회에 만나 사랑 아닌 ‘엔조이’로 시작했습니다.(중략) 그때 나는 그를 끌어안고 포옹했습니다. ‘키스’도 했습니다. 아지껏 육체관계까지는 도달치 않았으나 그는 나를 잊지 못하여 고민했고 나 역시 고민하던 끝에 저는 신성한 학원을 버리고 군에 지원했습니다.” 등의 감정적 호소의 서술방식을 동원하기도 했다.

『여원』, 『희망』의 법률상담이 사실 중심의 질문과 답변을 위주로 했다면 『아리랑』은 질문자의 긴 사연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서술하면서 고민을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특성을 보인다. 질문자의 사연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질문자의 고민에 공감하게 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또한 이러한 편집체계는 이 잡지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완독잡지’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아리랑상담실〉 대부분은 혼인과 이혼, 재산 상속, 호적 입적에 해당하는 가족법¹⁷⁾의 문제들로 강제혼인에 대한 이혼, 부정한 아내와의 이혼, 축

17) 신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제4편 친족편과 제5편 상속편을 가족법으로 호칭한다. 가족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습에 따르기 마련이며 따라서 그 변화가 더디다는 특성을 갖는다. 즉 가족법은 전통적인 인간의 의무를 규율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관습법이다. 가족법을 포함한 민법은 식민지 시기 ‘조선민사령’을 토대로 하고 있다. 아무 특정화 없이 관습을 가족법의 중심적 근거로 삼은 민사령 제11조는 이후 가족법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 조선민사령이나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 다음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친족상속 분야에 관해서는 제11조에 의하여 관습에 따르게 되어 있

첩으로 인한 서자의 호적 입적, 동성동본 혼인 등으로 대부분은 일상적, 개인적 차원의 법적문제들로 민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계재일	관련법	내 용	상담자
1956.11	상속	남편 죽은 후 재산상속	교수
1957.11	혼인	사촌 여동생과의 혼인	문학가
1959.01	혼인	남편과 사별한 후 형부와의 임신과 혼인	변호사
	이혼	부모님에 의한 강제 혼인 후 부인과의 이혼	변호사
1959.02	혼인	이종사촌간의 혼인 여부	변호사
1959.03	이혼	화류계 여인과 동거 후 이별에 대한 법적 절차	변호사
	혼인	어머니와 같은 성의 동성동본 혼인	검사
1959.04	혼인	남편 몰래 혼인 신고하는 방법	변호사
	이혼	부모님에 의한 강제혼인 후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혼인	변호사
1959.05	혼인	신부의 혼인취소와 땅문서 강취	변호사
1959.08	인신 매매	사창가로 팔려간 여동생의 문제	변호사
	이혼	혼인 전 부정한 아내와의 이혼	전 민의원
	이혼	7년 동안 실종된 남편과의 이혼	변호사
1959.09	혼인	애인과의 동성동본 혼인	시인
	혼인	다른 남자와 약혼한 애인과 혼인	변호사
1959.11	강제 추행	남성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함	변호사

었다.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112-113쪽.

1960.04	이혼	아내의 간통으로 인한 이혼	변호사
	이혼	사기행위 한 아내와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변호사
1960.06	이혼	처녀가 아닌 아내와의 이혼	시인
	상속	5년 전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호주상속 여부	변호사
1960.07	이혼	부모님에 의한 강제혼인 후 이혼	변호사
	입적	축첩에 의한 혼외자 입적	변호사
1960.10	혼인	10촌 근친과의 혼인	시인
	이혼	방탕한 남편의 이혼 요구	변호사
1961.06	혼인	처가에 입적하려는 데릴사위	변호사
	혼인	애인과의 동성동본 혼인	변호사
1961.08	재산	6.25 때 빼앗긴 집 소유권	변호사
	출생 신고	아버지 사망 후 호적상 출생신고	변호사
1961.11	고리채	빚보증으로 인한 파산과 고리채	변호사

〈표 1〉 〈아리랑상담실〉 목록

〈아리랑상담실〉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는 혼인과 이혼이었는데 “부모님의 강제로 애정 없는 혼인 후 이혼하고 현재 임신하고 있는 다른 여성과 혼인”(1959.4) 문제에 대해 답변자는 “민사령 제11조에 혼인은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혼인계를 제출하지 아니해도 혼인식을 거행하여 함께 사는 내연의 부부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코져 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내야 한다.”고 법률적 조항에 대해 설명하며, 강제 혼인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여성분에게는 더 원통한 일이기에 현재의 부부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헤어진 아내가 자식을 핑계로 위자료와 생활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질문”(1960.4)에서는 신민법의 이혼사유에 대한 6가지의 조항¹⁸⁾을 소개

하면서 헤어진 이유에 따라 이혼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조언한다. 전부인의 유책사유를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길 수 없고 이혼 시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처녀가 아닌 아내와 이혼하고 혼인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남편”(1960.6)의 질문에 대해서는 남편도 동정을 상실했는데 아내의 정조만을 원하는 것은 이기심이라고 비판하며 질문자의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언급한다. 과거를 뉘우치고 있는 부인의 마음의 정조가 더 중요하며,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답변자들은 이혼의 법률적 조항과 위자료의 여부 등을 조언하지만 법적 처리에 국한하지 않고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혼에 대한 문의는 대부분 남성들이었는데, 다른 여성과 혼인하기 위해 이혼 절차를 문의하거나 아내의 간통이나 과거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하는 문제,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었다. 남성들의 이혼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은 신민법이 그동안의 일본의 민법을 의용한 구민법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구민법에서는 처가 간통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의 이혼을 허락했는데, 신민법은 ‘배우자의 간통’으로 명시되어 남편의 간통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이 조항은 이혼에 있어 그 동안 여성에서 불리했던 조항이 수정되면서 최소한의 형식적 평등을 위한 법적 조치였다.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축첩의 관행들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민법의 조항들은 남성들에게

18) 구민법에서 이혼의 재판상 이유는 배우자의 중혼, 처가 간통을 한 때, 남편이 간음죄로 인해 형에 처하여진 때, 배우자의 처벌, 배우자에 대한 동거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와 모욕, 배우자로부터 악의로서 유기당한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학대와 모욕을 당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로 제시되었다. 신민법에서는 민법상의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버렸을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삼년이상 분명치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를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되었다.

낮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법률혼주의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식을 혼인의 증명으로 인식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의 법적 문제는 더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혼인에서는 특히 동성동본의 혼인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이종사촌과의 혼인, 어머니와 성이 같은 애인과의 혼인, 10촌 근친과의 혼인 등이었다. 답변자는 “우리나라의 현행관습에 의하면 난계혈족 사이에는 촌수를 불문하고 혼인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모계방계육촌이내의 혈족 간(母系傍系六寸以內의 血族間)에도 혼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四二九三년 一월 一일부터 시행하는新民법(新民法)도 八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을 금하고 있으므로(新民법제 八〇九조 二항) 당신의 경우는新民법이 시행되더라도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1960년 1월 시행된新民법의 법률적 조항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新民법의 경우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을 유지했는데, 그 이유는 유교주의 전통의 미풍양속의 관습이란 명분 때문이었다. 전통을 원칙으로 가족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논자들은 동성동본 금혼문제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보였고, 유교적 가족질서는 한국의 문화적 우월감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인식했다.¹⁹⁾ 가족법의 토대는 가부장적 전통이었고 동성동본 혼인불가 입장은 서구와 대비되는 한국의 부계주의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승만 또한 “이것을 무시하면 인류도덕 상으로나 생물학 상으로 크게 불리할 것이니 그 전 법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옳고 좋을 것”²⁰⁾이라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에 대한 전통론을 옹호했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는新民법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는 법률조항이었다.

新民법은 정부수립 후 법전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편찬에 착수했

19)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7, 149쪽.

20) 〈이승만의 유교 중시〉, 『조선일보』 1957.11.19. 석간

으나 친족, 상속 편(가족 편)의 법안 과정에서 관습, 유제라는 이유와 남녀 평등의 원칙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제정이 지연되었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서 가족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했고, 남녀가 모두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가장권을 부정하고 가족의 평등한 관계가 보장되어야 했다.²¹⁾ 그러나 법전 편찬위원회 김병로 위원장이 민법을 직접 기안하면서 보수성이 강화²²⁾되었는데, 그는 자기 나라 및 민족의 윤리와 역사적 전통을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상계』는 신민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는데 〈교양으로서의 법률학-입법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1956.3)에서 민법초안 784조의 ‘여성호주는 그 집의 계통을 계승한 남자가 입적할 때에는 호주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족이 된다.’는 규정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여성의 권리를 확대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신민법과 민주주의〉(1959.2)에서도 신민법이 과거의 봉건적 유물이 그대로 살아 있는 부분이 많고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입법 치고는 너무나 구태의연한 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논쟁 속에서 탄생한 민법 특히 가족법은 실질적인 가족 구성과 유지를 위해 새로운 사회상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야 함에도 현실을 무시하고 전통론을 토대로 한 까닭에 젠더 불평등의 요소들이 잔존했다. 〈아리랑상답실〉에 이러한 동성동본에 대

21)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7, 128쪽.

22) 김병로 위원장은 민법안의 취지 설명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오늘날까지 늘 가지고 내려온 우리나라 문헌 우리나라 역사의 전통, 이러한 데에서 냉철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혹은 중고 혹은 최근 기타에 조선조 5백년간 이런 데에서 어떠한 이만한 것은 건실하고 참 순풍양속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 점을 포착해서 국민의 정신에 별로 충격이 없고 우리나라 순풍미속을 오히려 조장하고 완성시킬 이러한 의도 하에서 붓을 잡게 된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며 가족법의 근거가 현실의 풍속에 근거를 두고 있고 순풍양속을 핵심적 입법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병로, 「민법의 취지 설명」,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 26회 제30호, 1957.11.6, 7쪽.

한 문의가 빈번했다는 것은 현실에서 이 조항에 구속되는 대중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가족구성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민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부정적인 법감정을 유발했다.

〈아리랑상담실〉은 법률상담을 통해 개인들의 권리를 가족법의 차원에서 혼인, 이혼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조언했다. 가족법은 법에 의해 보호된 가정, 안정적인 가족 구성이라는 본질을 내재하고 있고, 호주제의 전통적 가계제도를 토대로 국가 정체성을 대표하는 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담하는 법률적 조항은 기존의 대중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법이라는 이유로 규율함으로써 대중들의 삶과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 『아리랑』은 오락지의 특성을 대변하면서 독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률에 의한 처리를 제시하는 한편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유한다. 법을 동원한 문제 해결보다 개인 간의 조율과 타협이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를 우려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에 소외되어 있는 소송을 기피하는 당대 대중들의 법의식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대중오락지의 법률상담은 혼인, 이혼, 상속 등의 문제가 가족법의 차원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을 법의 개념으로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범죄 실화를 통한 법담론의 공유와 법의 대중화

『아리랑』에서 흥미 차원, 실감의 차원으로 법담론을 다루고 있는 것은 〈법창소설〉이다. 〈아리랑상담실〉이 개인에 관련한 법의 문제를 문답의 형

태로 보여주었다면 <법창소설>은 범죄에 대한 법 판결의 과정을 실화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실감의 차원으로 법담론을 구성한다.

계재일	제목	내용	계재일	제목	내용
1960.01	독부	간통	1961.02	불행한 정열들	강간
1960.02	사랑은 비극과 함께	살인	1961.03	단층에 핀꽃	이혼
1960.04	시련의 영지	간통	1961.04	나의 죄가 아니다	살인
1960.05	잊을 수 없는 그대	간통	1961.08	思夫記	이혼
1960.06	비정의 염애	사기	1961.09	血紋	절도
1960.07	아름다운 여심	횡령	1961.10	자리 없는 애정 (전편)	절도
1960.08	파혼(문제편)	살인	1961.11	자리 없는 애정 (하편)	
1960.09	파혼(해결편)				
1960.10	제2의 여심 (문제편)	살인	1961.12	애증의 영토	살인
1960.11	제2의 여심 (해결편)				
1960.12	제3의 상속인	상속			

〈표 2〉 <법창소설>

<법창소설>은 1960년 1월 민법이 시행된 것과 동시에 연재를 시작하여, 1961년 12월까지 19편 연재된다. 여기에는 간통, 강간, 준비속가족 살인, 재산상속 등의 범죄 사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신민법의 시행에 따른 기획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 『아리랑』의 경우 1958년 10월을 기점으로 4·6배판으로 판형을 바꾸어 '원색 대화보'를 대폭 늘리고, 연예, 오락

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볼거리에 치중하는 오락잡지로 변화된다. 이러한 잡지의 편집체계에서 <법창소설>의 연재는 새로운 것이었고, 일상에 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 실화의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법창소설>에 대해 편집자는 “법창에 비치인 세상은 무섭게 차다”고 말한다. 필자의 오랜 변호사 생활의 체험에서 각자 잊지 못할 세상만태를 법률적 해석과 더불어 소설화”해서 보여준다고 기획의도를 언급한다.

<법창소설>은 변호사 김병희를 필자로 해서 실제 경험한 범죄사건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을 실화형식으로 서술한다. <독부(毒婦)>(1960.1)의 경우는 자신을 따라온 여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같이 호텔에 가게 되고, 이후 남편이 나타나 백만 원을 주지 않을 시 간통으로 고소장을 검찰에 낸다고 협박을 받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변호사의 해설>이 따로 부기되며 해당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석한다.

1. 소위 미인계 사건입니다. 현대 도시문명이 낳은 지능적인 사기 또는 공갈사건입니다. 법률상의 부부가 공모하여 돈버리 한 사건입니다.

2. 참고로 법률 조문을 소개하겠습니다. 配偶者 있는者가 姦通한 때는 二年 以下の 懲役에 처한다. 그와 拒姦한 자도 같다. 前項의 罪는 配偶者의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但 배우자가 간통을 「慾通」 또는 「容恕」한 때에는 告訴할 수 없다. (刑法 第二百四拾一條). 夫婦의 一方은 左의 境遇에 限하여 離婚의 訟訴를 提起할 수 있다. 처가 간통했을 때 (民法 第八百拾三條二項) 민호씨는 공갈당한 것입니다. 정조를 밑천으로 삼는다는 사례는 인권주의 관념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론 역시 화려한 도시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호씨는 계획적으로 범죄적 수단에 인하여 백만 원의 손실을 보았지만 인생은 길고 인생사 복잡한 것이니까 이런 일도 있다는 경험은 인생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에서 벌어지는 간통을 매개한 지능적인 사기와 공갈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독부〉는 개인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것이 민법과 형법의 법률적 조항이 적용되는 예를 설명한다. 계획적인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법창소설〉은 당시 신문에서도 다룰 만큼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서술한다. 〈법창소설〉은 기사 차원의 사실성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인물의 감정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실감의 차원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이야기형식의 서술방식은 일상적 차원의 범죄 유형을 보여주는데 용이했고, 법 지식을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사랑은 비극과 함께〉(1960.2)는 전후 가정의 파탄과정을 보여주는데 사창가에서 아내를 만난 박훈도가 해외출장을 간 사이 외도하는 아내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아들을 찔러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는 이야기다.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피고인은 가해자가 아닌 운명에 희생된 피해자라고 변론한다. 그리고 직계존비속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을 경우에는 십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情狀酌量減輕制度가 있어서 아주 동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최하 5년형을 감하면(반까지 감할 수 있음) 징역 3년까지는 執行猶豫를 할 수 있으니 出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죄가 될 것을 절원합니다.”라고 언급하며, 법 판결의 예를 제시한다. 전후 퇴폐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한 가정의 파탄과 비속 살인의 비극은 개인의 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연한 일로 일생을 망치는 수도 많으니 죄를 짓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질서를 존중하고公德심을 배양토록 하는 도의심 양양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변호사는 법적인 조항에

의한 처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독자를 계도한다. 이러한 변호사의 해설로 인해 〈법창소설〉은 공동체의 질서 안정을 위한 법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의 법의식을 환기했다.

〈법창소설〉은 4.19 이후 법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나의 죄가 아니다〉(1961.4)는 법정에서 살인미수 여성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을 서술하며 여성의 법적 소외의 현실을 비판한다. 18세 옥란은 혼인 약속을 빌미로 대학생 민호에게 추행 당하게 되고, 민호를 찾아 서울에 올라온 옥란은 서울의 부잣집 딸과 약혼한 민호에게 버림받게 된다. 낯선 사내에 의해 사창가에 팔린 옥란은 손님으로 온 민호가 돈으로 자신을 산 것을 알게 되고 배신감에 그를 칼로 찌르고 살인미수범이 된다. 소설은 살인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피의자가 진술하고 이에 대해 재판장이 법 판결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소설은 법정 안에서의 피의자의 증언과 살인이 일어나게 된 과거를 교차 반복 서술하여 살인을 하게 되는 동기를 자세하게 서술한다. 그리고 옥란은 “법이 저에게 공정한들 남심의 횡폭에 눌리고 망쳐 버린 돌이킬 수 없는 저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라는 부정적인 법감정을 드러낸다. 법의 보호가 없었기에 매춘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사창가의 마굴”에서 벗어나지 못한 옥란은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사는 “죄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죄를 범하게 된 여러 사정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고, 법이 사정을 참작해서 공평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법적 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정숙한 여인에서 매춘녀로 전락한 여성의 증언은 법적 소외로 인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법의 공백 상태를 보여준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제정된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의 존재는 부정된다. 즉 소설은 여성이 매춘녀,

살인자로 전락된 과정을 통해 법적 정의가 무화된 국가 상태를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에 대한 부정적인 법감정을 강하게 서술하고 있는 〈법창소설〉은 웃음과 명랑을 주조로 하는 대중오락지에서 낫선 것이었다. 〈법창소설〉이 이러한 법의 공백과 대중의 부정적인 법감정을 재현하는 것은 당대 법적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필연적 요구 때문이었고, 이것은 4.19 이후 사회적 변혁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창소설〉은 강도, 사기, 살인의 범죄 실화를 서사화하여 법 준수에 대한 당위성과 법에서 소외되는 개인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법적 주체로서의 국민의 개념을 구성하게 된다.

〈법창소설〉은 현실의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의 쟁점이 가족의 문제로 수렴되면서 민법적 차원의 법적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 법에서 소외된 개인은 법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수동적인 법의 객체에서 벗어나 법의 주체로서의 갱신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개인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의식은 대중지의 법담론을 통해 가능했고, 이것은 1960년대 시민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필연적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아리랑』의 법담론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이며, 가족제도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환기하며 가족법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시사교양잡지인 『신태양』과 정론지인 『사상계』의 법담론 구성에서 차별된다.

여기에서 당대 잡지들의 법담론의 양상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당시 모든 잡지에서 일상적인 생활담론의 측면에서 법담론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차이는 잡지의 성격과 독자층의 성격에 따라 구별된다. 즉 1950년대 잡지의 법담론의 차별화는 잡지의 성격과 매체의 전략과도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 잡지의 정론지인 『사상계』, 대중시사교양잡

지를 표방했던 『신태양』과 오락을 중심으로 완독잡지를 지향했던 『아리랑』은 독자층의 설정에서부터 변별된다. 학문적 지식과 교양을 잡지를 통해 충족하고자 했던 『사상계』, 『신태양』의 법담론은 헌법의 개정과 국가보안법의 개악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면서 법률적 법리와 민주주의적 법질서 측면에서 법을 공유했고, 일반대중을 독자층을 설정했던 『아리랑』은 법의 대중화와 법을 상식화 수준에서 법담론을 구성했다.

시사교양잡지인 『신태양』은 발행 초기 1954년 2차 개헌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며 법담론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2차 개헌은 대통령 3선 연임제 한 철폐,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 지위 승계 등을 중심으로 한 1950년대 초 국민의 법감정에 큰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었다. 『신태양』은 불법적으로 통과된 개헌안에 대해 〈개헌파동 후의 정국을 전망한다〉(임흥순, 1955.3)를 게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담론화 한다.

민주주의는 혁명정치가 아니고 전제주의가 아닌 이상 헌법을 개정한다거나 법률을 토의하고 또한 정권을 교체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민주적이고 평화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폭력과 같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없다. 그러한 폭력은 언제나 많은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때로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가에의 많은 해를 끼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도 이점을 유의하여 극력 폭력 행사를 방지해야만 될 것이다. 호화로운 자기만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정권 욕에 불타 수단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드는 정치적인 수단은 우리의 장구한 역사를 더럽히는 결과가 되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 23)

임흥순은 각 분과위원회 결의를 통과한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의회의

23) 임흥순, 「개헌파동 후의 정국을 전망한다」, 『신태양』, 1955.3, 70쪽.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과오이며, 당당한 ‘페어플레이’로서 민주정치 의회정치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국민과 민족에게 있어 이로운 것이라고 언급한다. 여기에서는 개헌이 민권을 수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국가의 최상위 법으로서의 헌법의 위상과 민주주의의 수호의 차원으로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신태양』은 민주적 법질서를 훼손한 이러한 개헌정국의 사태에 대해 〈법, 국가, 질서〉(신상초, 1955.5)에서 민주국가의 정치는 법에 의한 정치이기에 법체계에 대한 정의의 요구와 합리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하고, 법 조항의 변화가 적어야한다는 것을 언급한다. 법질서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을 만들고 움직이고 지키는 자들의 숭선준수의 시범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신태양』은 법담론을 통해 국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속해야 하는지, 법치주의에 의한 민주정치의 정체를 논의함으로써 당대 법제도의 이상적 모형을 제시했다.

『사상계』에서는 신국가보안법²⁴⁾ 개정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는데 단적으로 장준하는 『사상계』(1959.2) 〈권두언〉을 “무엇을 말하라-民權을 짓밟는 橫暴을 보고”라는 제목만 쓰고 내용은 공란으로 남겨 국가보안법의 폭거에 항거했다.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위기〉(한태연, 1959.2)

24) 신국가보안법은 조항의 문제도 있었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1958년 12월 27일 야당의원들은 강제통과 된 법안의 표결 무효 확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고,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했다. ‘보안법반대국민대회준비위’도 12월 30일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시위를 기도했다. 1959년 1월 15일 신국가보안 법안이 국회에 상정 논의되는 동안 언론, 문인, 법조인, 무소속의원들로 구성된 ‘민권 수호국민총연맹’이 결성되었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법안 통과에 항의하기 위한 전국 집회를 계획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1959년 1월 15일 신국가보안법이 발표되고, 1959년 1월 26일에 광화문네거리 앞에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및 지방자치법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산발적으로 벌였다. 이 시위는 국가보안법 발효 이후 서울에서 최초로 일어난 시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의 1959년 2월 4일자 칼럼 「餘滴」의 기사가 내란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자가 기소되었고 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게 된다.

에서는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개정안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정치적 견지에서 정치적 불순성과 법리론, 입법기술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투쟁과 주권자인 국민의 결의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특히 『사상계』는 미국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는데 <이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시련>(와싱턴데일리뉴스, 1958.12.29.사설)은 “이박사의 고압적인 수단방법은 시종일관 그 자체가 민주주의 진영과 대열을 같이하는 정부에게 명예가 되는 일이 아니다.” “그가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용서 없이 장악해 버린 자기의 새 권력을 잘못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품는다. 이 법의 통과에 뒤따른 대중의 데모는 이대통령 정부에게는 명백한 위험신호이다.”라고 언급하며 국가보안법 파동이 제1공화국의 존폐의 위기를 가져올 것을 예단하고 있다. 『사상계』는 외신들을 통해 보안법 파동이 미국정부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승만정부의 패착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이승만정부 수립에 기여했던 우방국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이승만의 폭거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건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⁵⁾

신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는 대중들이 법의 무지에서 벗어나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 된 도리로서 현 상황의 위기를 인지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법

25) 『사상계』는 1959년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한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종합검토>(정태섭, 1959.1), <보안법 파동>(1959.2),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위기>(한태연, 1959.2),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가-1.7데모와 1.13집회의 유산>(1959.2), <법에 대한 반향심의 분석>(이태재, 1959.2), <형법학의 새로운 경향>(이건호, 1959.2) 등의 비판적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특집으로 <외국인의 눈에 비친 2.4파동>(1959.3)을 기획하여 외신들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국인의 불행한 사태>(솔트레이크시티 트리뷴), <한국에서의 언론자유제약>(데 모인즈데지스터), <시험기에 놓인 한국>(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 <한국의 불안기>(뉴욕타임즈), <한국에서의 폭력>(와싱턴포스트), <한국에서의 자유>(와싱턴포스트), <우리의 우인 이박사>(미내아폴리스 트리뷴), <끈기있는 노인>(런던타임즈), <한국의 함텐씨>(맨체스터가디언) 등 17개의 외신 기사를 번역해서 게재했다.

개정의 폭력성을 환기했다. 또한 이러한 비판적 논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보안법 처리를 규탄하는 시위로 이어졌는데, 언론기관과 법 조제, 시민들은 자유당의 횡포를 비난하며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했고 전주집회에서는 천 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보안법 파동을 정점으로 대중들 사이에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감은 팽배했고 이것은 성명발표와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정론지와 시사교양지의 성격을 표방했던 『신태양』, 『사상계』는 헌법 개정, 국가보안법 개정이 민주주의를 침해, 붕괴시키는 수준의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대중오락지를 표방한 『명랑』, 『아리랑』, 『희망』에서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관심하며,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매체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잡지들은 상업성을 위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영화, 연예기사를 전략적으로 배치했고 '재미와 흥미'를 위주로 한 잡지의 성격상 정치적 문제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실의 문제를 공유하는 미디어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질서를 훼손하는 법개정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독자를 의식한 대중잡지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은 대중잡지가 가진 하나의 제약, 한계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시기 잡지들은 매체의 성격과 편집체계, 독자층에 의해 법담론은 정론지의 국가주의적 법담론과 오락지의 일상주의적 법담론으로 차별적으로 전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예링은 법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같은 것²⁶⁾이라고 비유

한다. 법은 개인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반대로 개인의 이익이 타자의 이익에 반할 때, 사회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언급한다. 예링에게 있어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링은 법을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힘의 개념으로 인식했는데, 여기에서 힘의 원천을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실존 조건으로서의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명예권, 인격권을 의미한다. 법은 이와 같이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²⁶⁾ 법을 사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 행동하는 힘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링의 사유는 국가 재건기 식민지법의 청산과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법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국가 재건기 법이 국가 형성을 위한 제도적 측면과 국가에 순응하기 위한 국민 양성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면서 제1공화국을 형성했다면, 1950년대 대중지의 법담론은 국가권력에 대항하며 법치주의의 민주정치를 위한 국가상을 구상, 국민화담론의 일부로서 논의되었다. 법의 내재적 자율성과 제도적 타율성의 간극은 1950년대 비합법적인 방식의 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폭력적으로 나타났고, 1950년대 교양대중지와 대중오락지들은 잡지의 성격과 독자의 수준에 따라 국가적 차원, 일상의 차원으로 법담론을 구성, 법적 주체의 형성을 견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법담론은 법치주의에 대한 민주정치를 설계, 모색하면서 4.19를 예비하고 있었고, 1960년대 시민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6)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 법감정의 형성에 관하여』, 심재우, 윤재왕 옮김, 새물결, 2016, 39쪽.

27) 김학태, 「예링의 법사상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732쪽.

1950년대 대중잡지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현실의 구조를 해부하여 보여주기도 했지만, 지식과 교양을 전달하며 국가 재건기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상과 국가 정체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카데미한 정론형태의 학제적 차원으로, 또는 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로, 이혼과 혼인의 사적 차원의 생활담론으로 법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대중오락잡지인 『아리랑』은 법에 무관심하거나 법에 무지한 대중을 위해 현실 문제와 연계된 법률 상식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이것은 단순히 법지식의 전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기반 한 민주주의적 국민 만들기의 과정이었다. 국가 재건기 새롭게 형성된 국민의 정체성은 국가가 제정한 법 안에서 보호 받고 법의 준수를 약속할 때 생성되는 것이기에 법의 대중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법에 의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보호되는 법치주의는 제1공화국의 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념을 정초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고, 여전히 식민지법의 부정적 법감정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새로운 국가의 법률 제정과 법 판결의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아리랑』은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법담론을 전유하면서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법률상담과 흥미와 재미의 읽을거리로서 범죄 실화를 연재했다. 〈아리랑상담실〉은 혼인과 이혼의 문제, 동성동본의 생활 법률문제를 답변하여 독자들의 일상에서의 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법창소설〉의 범죄서사의 주제를 가족으로 한정함으로써 신민법의 개정에 대한 법적용의 현실성을 논의하고 있다. 가족법이 민법의 일부로서 가족의 구성 및 혼인의 계약을 명시한 법이기에 『아리랑』의 법담론은 가족에 대한 법의식을 형성했고, 잡지는 가족법 차원에서 논의를 한정함으로써 가족을 법적으로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것은 전후 법제의 청산과 생성의 길항 속에서 법인식을 통한 국민화 과정의 일부였고, 4.19의 시민적 정체성의 형성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다.

법의 모습으로 비유되는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를 재는 저울을 들고 있으며, 다른 한 손에는 권리를 실제로 집행하는 검을 쥐고 있다. 저울은 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의미하고, 검은 법의 실효성, 강제성을 의미한다.²⁸⁾ 저울을 가지지 못한 검은 법 제정과 집행에 대한 폭력성을 의미하고, 검을 가지지 못한 저울은 법집행을 할 수 없는 무력한 법을 의미한다. 검과 저울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법의 상태가 되어야 하며 그럴 때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는 의미이다. 정의 없는 법은 폭력이고 힘이 없는 법은 무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여신이 1950년대 법담론의 논의에서 빈번하게 연상되는 것은 국가 재건기 법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며, 이러한 딜레마는 신생국가의 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28) 윤철홍, 「예링의 법사상」, 『법철학연구』 제10권 1호, 한국법철학회, 2007, 124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신태양』, 『아리랑』, 『명랑』, 『여원』, 『희망』, 『사상계』, 『경향신문』, 『동아일보』

2. 논문과 단행본

공임순, 「삼중당의 '대중문고', 『아리랑』, 역사물의 연쇄와 순환」, 『춘원연구학보』 26집, 춘원연구학회, 2023, 227-259쪽.

김경민,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주거권을 주제로 한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8집, 우리말글학회, 2016, 239-266쪽.

김경수, 『한국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일조각, 2019.

김연숙, 「'육망의 민주주의'와 젠더의 재구성 - 전후 대중잡지 『아리랑』에 나타난 직업 여성 기획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9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3, 109-140쪽.

김윤경, 「1950년대 종합지의 매체전략과 독자인식- 종합교양지 『신태양』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제11권 4호, 한국리터러시연구학회, 2020, 393-409쪽.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7.

김학태, 「예링의 법사상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715-743쪽.

김현주, 「1950년대 잡지 『아리랑』과 명랑소설의 '명랑성':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173-206쪽.

마정윤,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제8권 3집,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155-186쪽.

문재태,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에 관한 검토: 국가보안법 제7조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제13권 4호, 한국테러학회, 2020, 5-25쪽.

변학수, 조흥석, 「법의식, 법감정 그리고 법제도-독일과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내재된 법의식의 문화학적 고찰」, 『독어독문학』 제103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7, 173-195쪽.

- 신은경, 「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양상 - 『아리랑』에 실린 「애정의 진리」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0, 민족어문학회, 2014, 117-143쪽.
-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 엄순영,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민주법학』 61호, 민주법학연구회, 2016, 49-79쪽.
-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집, 상허학회, 2010, 397-454쪽.
-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 전반기 1952.8-1956.3의 매체전략과 문학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현대 문학의 연구』 5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11-570쪽.
- 위수지, 「『아리랑』지 게재 소설연구: 195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 오유석,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역사비평사, 2011
- 윤철홍, 「예령의 법사상」, 『법철학연구』 제10권 1호, 한국법철학회, 2007, 107-148쪽.
- 정영진, 「4.19혁명의 투신도법- 1950년대 법감정과 숨은 주체」, 『현대문학의 연구』 7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301-335쪽.
- 최애순, 「50년대 『아리랑』잡지의 '명랑'과 '탐정'코드」, 『현대소설연구』 4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51-390쪽.
- 홍순애, 「국제적 냉전체제 하 반공주의의 연성화와 '스파이'담론의 대중화 전략- 1950년대 『아리랑』잡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6집, 국제어문학회, 2023, 347-374쪽.

Abstract

The composition of Legal Discourse and media strategy of
『Arirang』 a popular magazine in the 1950s

Sunae Hong(Dongduk Women'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d the popularization process and media strategy of legal discourse, focusing on 『Arirang』, a representative popular entertainment magazine in the 1950s. In the boom of popular newspapers in the 1950s, magazines organized legal discourse in various ways, and 『Arirang』, an interest-based popular entertainment magazine, attempted to induce readers' participation and common sense of the law by conveying readers' stories and sharing legal solutions through the “legal counseling” section based on the “story-oriented editing system.” In addition, he delivered the issue of legal application in reality on a daily basis by serializing “crime truth” as a reading material of fun and reasoning that matches the nature of the entertainment site. The serialization of this segment focused on the difficulties of legal application of marriage and divorce at the family law level and the issue of legislation ignoring reality, while discussing the contradictions of the father-centered law, which led to legal consideration of the family.

In the 1950s, the legal discourse of popular newspapers was discussed as part of the nationalization discourse, envisioning the state image of the rule of law by democratic politics against state power. This discourse established the concept of law as the reality of the state and led to the birth of the people as legal subjects. This was preparing 4.19 by driving the motivation for resistance to the eight laws of illegality and lawlessness, and played the role of practical discourse that constituted the subject of the revolution.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and the formation of individual

legal consciousness were possible through popular legal discourse, and this was an inevitable step in constructing civil identity in the April 19 and 1960s.

(Keywords: the 1950s, legal, 「Arirang」, constitutional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family law, legal sense)

논문투고일 : 2023년 8월 8일

논문심사일 : 2023년 10월 8일

수정완료일 :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0월 20일